

1. 개정이유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('17.10.18. 개정)으로 '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'21년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동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(질소산화물)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(안 제11조)

- 종합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.

나. 경유자동차배출가스(질소산화물) 측정장비 추가 및 검사결과표 서식 변경(안 별표 2 제2호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)

- 질소산화물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(질소산화물)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,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

다. 종합검사원 자격증 명칭변경 등 반영(안 별표 2 제3호, 부칙 제2조)

- 자동차검사산업기사 폐지(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통폐합)에 따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, 부칙에 종합검사 확대 대상지

역에서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보유자가 2년간 한시적으로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고자 함

라. 타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)
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 중 “제16호”를 “제17호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을”을 “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 1) 중 “자동차배출가스”를 “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”로 하고, 2) 내지 10)을 3) 내지 11)으로 하고, 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비고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 경유자동차배출가스(질소산화물)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
(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한한다)

바.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품명에 대한 검사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별표 2 제3호가목 종합검사원 자격란의 “자동차검사산업기사”를 “자동차정비산업기사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(자동차소유자용) ⑮배출가스의 경유란을 다음과 같

이 한다.

⑮ 배출가스	휘발유 · 가스	일산화탄소(CO) :	%		
		탄화수소(HC) :	ppm		
		질소산화물(NOx) :	ppm		
		공기과잉률(λ) :			
	경 유	매 연 :	%		
		질소산화물(NOx) :	ppm		
		최 대 출 력 :	ps		
		엔 진 회 전 수 :	rpm		
※ 측정값이 기준값의 80% 이상 배출되는 자동차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·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					

별지 제2호서식의 (제1쪽) 배출가스의 경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경유	검사 방법			
	매연			
	질소산화물(NOx)			
	최대출력			
	엔진회전수	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1의 대기관리권역 중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·보령시·아산시·서산시·논산시·계룡시·당진시·부여군·서천군·청양군·홍성군·예산군·태안군), 충청북도(충주시·제천시·진천군·음성군·단양군), 전라남도(목포시·여수시·순천시·나주시·광양시·영암군), 전라북도(군산시·익산시), 경상남도(진주시·양산시·고성군·하동군), 경상북도(경주시·구미시·영천시·경산시·칠

곡군)에서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종합검사의 실시) ①·② (생략)	제5조(종합검사의 실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할 때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판정을 받은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·제3호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0조제2항 제1호부터 <u>제16호</u>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한 후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 <u>제17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) 시·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<u>사항을</u>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.	제11조(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항을 우편</u> <u>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</u> --.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